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종합감사 결과

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21. 11. 17. ~ 11. 30. (10일간)

■ 감사 반: 감사담당관 등 7명 (실지감사)

■ 감사내용

○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수행한 주요사업 및 기관운영 업무 전반

나. 감사결과

(단위: 천원,건)

합계								통보					현지
산	금액	인원	문책 (인원)	시정 (금액)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계 (인원)	일반	인사 (인원)	모범 사례 (인원)	수사 요청	조치 (금액)
20		15			11 (15)			5	5				4

※ 첨부서류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ㅇ '구 서울역사' 문화재 관리업무 부적정	ㅇ 주의
	- 문화재인 '구 서울역사(문화역서울284)'를 관리·운영하면서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등 허가 없이 ▲귀빈실 옥상 석재 균열 등 보수(3회), ▲	철저
	'구 서울역사'입구 및 'TMO(국군 장병 안내소)' 등 간판임의 교체, ▲전시, 행사 등의 홍보물(현수막) 게시를위해 건물 외벽에 드릴 작업으로 걸개 고리 23개 부착 등문화재 보존·관리업무 부적정	
2	 전시품보험 가입 및 작품 운송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기획전시 등을 위한 작품 운송 업무를 처리하면서 ▲운송계약 시 운송사업자의 작품파손 등에 대한 책임 관련 사항미규정(18건), ▲기획전시 <○○○○> 출품작 1건의 운송사고에 따른 파손 건과 관련, 책임이 없는 진흥원이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(12,500천원) 부담 및 작품의 운송과업을 미완수한 운송사업자에게 운송비 전액(6,970천원)지급 등 업무처리 부적정 	운송계약 업무 철저 - 관련자 주의 촉구 - 진흥원이 부담한 운송 중 멸실작품 손해배상금(자기 부담금)을 귀책시유가 있는 자 등에게 구성하는 방안 등 강구
3	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▲'□□ 용역'등 5건을 당초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을 진흥원의 발의로 협상을 통해 추가 후 계약금액을 부적정하게 증액 ▲'△△ 용역'등 2건은 추가된 과업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완료 처리 후 대가 전액 지급 등 업무처리 부적정 	- 관련자 주의 등 촉구 - 「제안서 평가위원회
4	 ○ 우수 공예품 및 우수 문화상품 구입 관리 부적정 - 홍보·전시 등 목적으로 매입한 우수 공예품·문화상품을 보관·활용하면서 ▲입·출고 현황 등 관리대장 미작성, ▲정기적인 재고조사 미실시, ▲폐기 등 미활용품 처분절차 미규정 등관리 업무 부적정 	
5	 • 한지문화산업센터 종합운영 대행용역 관리 부적정 - 한지문화산업센터 운영 위탁용역을 관리하면서 ▲수탁사의용역비에 편성된 정수기·공기청정기 임차비용(1,998천 원)을 진흥원이 지급, ▲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'고객 설문조사'를 미이행하였는데도 완수 여부 확인 없이 대금 전액지급 등 업무 처리 부적정 	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관련자 주의 촉구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6	ㅇ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	ㅇ 주의
	-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▲교부 결정 내역을 공문이 아닌 전자우편(e-mail) 등 비공식적으로 통지(846건 중 629건), ▲보조사업 실적의 적정성 등 검토보고 및 내부결재 없이 담당자가 단독으로 정산확정(564건 중 447건), ▲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적게 편성 또는 우선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사업계획 또는 집행실적 그대로 인정(13건), ▲보조금으로 취득한중요재산의 보조금시스템 미등록·공시 누락(24건, 463,505천 원) 등 관리 업무 부적정	-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 사업 관리 철저
7	O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관리 부적정 - 보조금 관리·감독 업무를 하면서 보조사업자의 가족 간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'△△' 사업 추진 시 가족 간 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조금 반환 (취소) 등 제재 조치 없이 차년도 사업협약만 취소 조치 업무 부적정	○ 주의·통보 - 보조금 관리·감독 철저 - 기족 간 거래 등을 제한 하는 내용을 「문화체육 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」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
8	 이 예산 편성・집행 및 고정자산 관리 부적정 예산을 편성・집행하고 고정자산을 취득・관리하면서 ▲일반수용비 예산에 전문대행용역, 시설공사 등 명목으로 예산 일괄 편성・집행(19,962,320천 원), ▲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할 사무용 가구 등 고정자산을일반수용비(280건, 272,313천 원) 및 시설장비유지비(157건, 165,378천 원)로 구입, ▲신규 취득한 고정자산1,860건 중 1,172건을 고정자산 관리부에 미등록 등업무 처리 부적정 	o 주의 - 예산편성 및 고정 자산 관리업무 철저
9	 ○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및 관리 부적정 -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면서 ▲ 적립 마일리지의 97% 미활용, ▲ 일부 직원의 경우 개인 여행 등의 사유로 마일리지 사적 사용(3명) 등 업무 처리 부적정 	○ 주의 -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·관리 업무 철저 - 관련자 주의 촉구